| 문서번호 | 인사팀-901 |
|---|---|
| 결재일자 | 2024.03.12 |
| 공개여부 | 비공개 ( 7 ) |
| 방침번호 | |

| 주임 | 팀장 | 실장 | 원장 |
|---|---|---|---|
| 백희란 | 최준배 | 박경원 | 윤재삼 |
| 협조 | 대리<br>봉선호 | | |

서울시사회서비스원

# 서울시 일·생활 균형 3종 세트 추진 계획

2024. 03. 12.


서울시사회서비스원
(인사팀)

## ☑ 사전 검토 항목

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| 구분 |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| 검토 완료 | 해당 없음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**1. 일반사항** | | | | |
| 정책일반 | ◆ 제반 법규와 실태를 검토하였는가? (법령, 규칙, 통계·빅데이터 등) | ■ | □ | |
| | ◆ 정책, 계획 등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? | ■ | □ | |
| | ◆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(산출, 과정, 성과 등)는 마련하였는가? 아닐 경우,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·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? | □ | ■ | |
| | 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는가? | ■ | □ | |
| **2. 부서협력** | | | | |
| 협 력 | ◆ 기획, 인사, 예산, 노무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였는가? | ■ | □ | |
| | ◆ 소속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? | □ | ■ | |
| **3. 혁신추진** | | | | |
| 계획수립 | ◆ 수립한 계획은 혁신방향에 부합하였는가? | □ | ■ | |
| | ◆ 수립한 계획은 혁신계획의 내용과 일치하는가? | □ | ■ | |

# 서울시 일·생활 균형 3종 세트 추진 계획

기획조정실장 : 박경원☎6925-3697 인사팀장 : 최준배☎2038-8675 담당 : 백희란☎8022

**초저출생 위기 극복 및 직장 내 출산·양육 지원 제도 정착을 위한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'서울시 일·생활 균형 3종 세트'를 추진하고자 함.**

## □ 관련근거

○ **"'서울시 일·생활 균형 3종 세트 추진 협조 요청"** 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7015호, '23.06.12.)

## □ 추진개요

○ **서울시 일·생활 균형 3종 세트 추진**

| 항 목 | 내용 |
|---|---|
| **❶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** |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 출산휴가 의무적 부여<br>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권고제(연1회) |
| **❷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** | 가. 육아휴직 사용 권고제(연1회)<br>나.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모니터링(연1회)*<br>다. 복직자 적응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·추진 |
| **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** | 전 직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권고(연1회) |

* 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에서 모니터링 추진 예정

## □ 세부 추진과제

### ❶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

○ **추진목적:** 근로자의 청구 없이도 근로자의 배우자(여성)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10일 모두 사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 부여 필요

○ **관련규정:**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
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무규정 제30조(청원휴가)

○ **추진내용: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(10일)**(출산일로부터 90일 내)

- 직원의 배우자(여성)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 90일 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출산휴가 10일 부여(1회 분할 사용 가능)
- 근로자가 미청구 시 부서장이 기한만료일(출산일로부터 90일)로부터 역산하여 잔여 휴가 일수만큼 휴가 부여

○ **추진방법**

## ❷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

### 가. 육아휴직 사용 권고제

○ **추진목적:** 엄마·아빠가 함께 휴직하고 함께 육아할 수 있는 환경조성

○ **관련규정:**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(육아휴직), 재단 인사규정 제26조제6항

○ **추진내용:** 전직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

○ **추진방법:**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사용 서면권고(연 1회) 시행

### 나. 복직자 직무 적응 교육 시행

○ **추진목적:** 복귀하는 직원의 원활한 업무 적응

○ **관련규정:**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6(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)
재단 인사규정 제35조(교육훈련)

○ **추진내용:** 기관의 변화, 복귀 직무 및 현안 업무에 대한 안내

○ **추진방법:** 복직 후 1주일 이내 교육담당 부서 및 복직자 소속부서 시행

## 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

○ **추진목적:*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를 통해 일·생활 균형 도모

○ **관련규정:**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무규정 제32조제8항제1호

○ **추진내용:** 전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

○ **추진방법:**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사용 서면권고(연 1회) 시행

## □ 향후 계획

○ **배우자 출산휴가 권고제 시행** : **'24년 3월**

○ **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시행** : **'24년 3월**